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원협의체 대상 자원회수시설 국외견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서울특별시는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신평 확보 등을 위해 법적 구성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선진 외국 도시 자원회수시설을 비교·확인하여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수준을 가늠하고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개선 등을 위한 주민 지원협의체 국외견학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 ※ 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 '06~'17년까지 10회 실시('12년부터 매년 1회 실시)

금년도에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국외견학을 4월~6월 기간 중에 시행할 계획인바,

- 1)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 해당 여부
- 2)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기간(선거일전 60일~선거일)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선진 외국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공무(민간인 포함) 국외여행계획(안)

- ◆ 여행기간 : 2018. 4월~6월(8박 10일)
- ◆ 여행국 :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폐기물 처리시설 기관방문)
- ◆ 여행자 : 서울특별시 공무원(1명),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11명), 시설 운영사(1명)
- ◆ 주요내용 : 선진 주요 도시 자원회수시설 이용실태 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자료 수집 등
-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 구성원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대표, 전문가, 소재지 구의원

□ 서울특별시의 검토 의견

(질의 1)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 국외견학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직무상의 행위라고 판단되어,

기피시설인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확보와 선진 주요 도시 자원회수시설 이용실태 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국외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 2)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기간(선거일전 60일~선거일)에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2018. 2. 12.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3,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국외 우수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 및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2018. 2. 2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